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403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4039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단1326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우기석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중

담당변호사 조규현

변론종결 2022. 6. 9.

판결선고 2022. 8. 11.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단1326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1.

9. 접수 제1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윤신, 판사 조미옥, 판사 김미리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건물

[도로명 주소] 서울 중랑구 I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업무시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번호: J

내역: 33.3㎡ 일반철골조

(대지권의 표시)

토지: 서울 중랑구 G 대 4022.1㎡

종류: 소유권

비율: 4022.1분의 12.776. 끝

